

광주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1가단55068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맥

담당변호사 권오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원석, 박충배, 서성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2020. 6. 2.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연 이율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및 D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C은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여금 중 원금 800만 원만을 상환하였을 뿐 현재까지 4,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C과 수차례 대부거래를 해왔는바, 2018. 9. 3.부터 2020. 7. 22.까지 사이에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별지1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주채무 및 보증채무) 내역’ 기재(이하 ‘원고 주장 C 채무내역’이라 한다)와 같이 합계 1,523,647,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 측의 C에 대한 대여금 합계가 334,731,500원(또는 5억 9,000만 원)에 불과함을 전제로 C이 원고 측에게 변제한 금액이 1,522,920,420원이어서 C의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에 따라 원고가 E의 계좌를 통해 C에게 입금한 금액은 2,000만 원인바,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에 따른 C의 주채무는 2,000만 원에 불과하다.
- 2) 원고는 C과 대부거래를 하면서 C으로부터 일수변제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아온바,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 별지2 C의 통장거래내역표 기재(이하 ‘피고 주장 C 채무 변제내역’이라 한다)와 같다. 이에 의하면, C은 2018. 2. 1.부터 2022. 2.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총 334,731,5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총 1,522,920,420원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총 채무 원리금을 초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에 따른 C의 채무 또한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C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에 따른 C의 주채무 액수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처분문서인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에 기재된 대부금액이 5,000만 원이고, 대부금수령방법 란에는 ‘전액 계좌 수령함 C’이라고 위 대부금액을 전부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의 ‘계약일자’, ‘대부거래만료일’란을 임의로 변경·추가 기재하여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변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대부거래 이외에도 이를 전·후로 수많은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고, 피고도 원고 측이 ‘E’ 명의 계좌 외에 F, G, H, I, J, E, K, L, M, N, O 등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여 C에게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에 따른 C의 주채무 액수는 5,000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의 기재와 달리 C의 주채무가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총 채권(대여금, 연대보증금) 액수

1) 먼저, 원고 주장 C 채무내역 중 원고가 C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얼마를 누구의 어떤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 C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C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채무(문자메시지 요청)’ 내역 순번 1번 ~ 13번 합계

236,647,000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 원고가 이 부분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47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뿐인데,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되는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실제 금전 송금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내역이 일부 존재하는바, 위 문자메시지들 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의 보완 및 추가 입증을 촉구하는 이 법원의 2023. 12. 11.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회의 변론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 주장 C 채무내역 중 ‘채무(차용증) 내역’ 순번 1번 ~ 43번 합계 1,287,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부분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갑 제4 내지 46호증 각 대부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대여금액’란 기재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금전의 인도’ 사실은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채권 중 대여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처분문서인 대부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 등에 ‘전액 현금 수령함’, ‘전액 계좌 수령함’, ‘전액 통장 수령함’ 등 금원의 수령을 인정하는 기재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 외의 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위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은 원고 주장 C 채무내역 중 ‘채무(차용증) 내역’의 ‘인정여부’란 ‘○’ 표시 부분 합계 1,026,000,000원이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금의 액수

피고는, C이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총 채무에 대한 변제로 합계 1,522,920,42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주장 C 채무 변제내역을 전부 인정한다.

○ 피고는 피고 주장 C 채무 변제내역을 통해 각 변제금의 출금 및 입금 계좌, 각 변제일자, 변제금액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2023. 12. 11.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실제 입출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8호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피고 주장 채무 변제내역의 합산액을 상회하므로 C의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변제내역별로 밝히려는 이 법원의 2023. 12. 11.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 주장 C 채무 변제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라. 소결

위에서 인정한 대여, 변제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연대보증금 채권 1,026,000,000원에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20. 7. 22.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464,222,950원¹⁾을 합산한 금액은 1,490,222,950원인데, 이에 대한 변제로 C이 지급한 금액은 2018. 2. 1.부터 2022. 2. 1.까지 합계 1,523,647,000원으로,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변제금 합계액이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33,424,050원 상당 초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은 일수변제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포함하여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C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주채무의 변제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별지

1) 기간식 $(1 + 324/366)$